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1823

발의연월일: 2021. 7. 29.

발 의 자:김성원·배현진·이 용

최형두 • 윤상현 • 박대수

이종배 · 정운천 · 권성동

최춘식 • 박덕흠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및 복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금융지원, 세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지원, 농가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금의 대부분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사용되면서 실제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은 그 피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서 피해주민과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등 국민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구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농가 등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정책보험 등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는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되어 있고, 시설이나 건물 등의 피해 복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농가 등에서 피해를 입은 해당 작물 등의 경영비,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 한 지원을 포함하여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본문 중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복구를 위한"을 "복구 및 해당 작물 등의경영비"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 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대한 피해의 복구 및 경영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최초로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상공인 시설 복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혂 행 개 아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있고, 이 경우 피해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구호 및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 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 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복구 및 해당 작물 등의 경

	영비
<u> <신 설></u>	7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
	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 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